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1
----------	-----

발의연월일: 2025. 7. 4.

발의자: 차인영, 이규선, 이순우,
박현우, 임현호, 우경란,
최봉희, 이성수, 정선희,
남완현, 최인순의원
(11인)

1.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다.

2. 불신임 사유

가. 2025년 7월 3일 개최된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부의장 유승용 의원은 건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통해 ‘의장이 리더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행사를 망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이 같은 발언은 외부 인사와 의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발언을 계기로 개원 3주년 기념식이 급히 마무리 되었음.

나. 이는 공식 행사장에서 의장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평가이자 부정적 인신 발언으로, 다수 내·외빈이 참석한 공적 자리에서 의회의 대표성과 질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임.

다. 해당 발언은 사적 의견 개진을 넘어,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의원 간의 협치와 상생의 기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는 부의장으로서의 품위와 책임감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으로, 직위에 따른 도의적 책임 및 의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나.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